붙임7 **장애인 지원자 편의제공 관련 안내**

□ 편의제공 대상

○ 공사 2026년 개방형직위(정보보안파트장) 채용 지원자 중,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

- '장애인복지법 시행령'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
- '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
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 장애로 인해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
□ 편의제공 신청 방법 및 결과 안내

○ 상기 '편의제공 대상' 해당자 중 희망자는,

① 입사지원서 제출 시, 【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기준】(다음 페이지 참조)에 따라 편의제공 신청

② 면접전형 대상자가 되면, 별도 안내에 따라 **장애인증명서, 중증장애인확인서(해당시),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** 증빙서류 제출

○ 공사에서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 등 검토하여 지원 여부 개별 통보

□ 유의사항

○ 다음 페이지의 **【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기준】**을 확인하시어,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신청 가능 내용,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

* 상이등급자의 경우,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신청(장애유형과 정도가 기재된 진단서 등 징구 가능)

○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로 장애유형 및 정도 등 지원자가 편의제공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 불가할 시, 의사진단서 등 보완서류 제출 필요

* **의사 진단서는**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**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2년 이내**에 발급 받은 진단서로, **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**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증빙서류 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상기 기준에 맞지 않는 진단서나 소견서,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 등은 불인정
-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이 기재되어, '편의제공 대상여부' 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
-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> [병원·약국 찾기]에서 조회 (반드시 확인 후 발급)

○ 기한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,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에는 편의제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**증빙서류 사전 준비 등 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【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기준 】

ㅇ 면접전형

장애유형		편의제공 내용
지체 장애	상지	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하지	· 면접장 내 이동 지원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뇌병변 장애		· 면접장 내 이동 지원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시각 장애		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청각 장애		· 안내사항 등 서면 제공 · 속기사 문자통역 제공 · 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착용 허용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